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발의】
검토보고서



2023. 11.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11. 20.

기획행정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달서구청장(총무과)
- 제출일자: 2023. 11. 3.(금)
- 회부일자: 2022. 11. 3.(금)
- 검토기간: 2023. 11. 3.(금) ~ 11. 10.(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행정절차법」 및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우수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국민 제안 규정」
 -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대상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3. 10. 4. ~ 10. 24.) 결과: 의견 없음
- 조례 · 규칙심의 결과: 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국민 제안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제안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는 일반사인의 영리와 관련된 사항이나 구 권한 밖의 사항은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여 제안제도가 악용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제안의 범위를 정의함.
 - 안 제4조는 제안서 작성,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제안준비자 편의 제공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제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규정 및 위원회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제안 채택을 위한 제안실무 심사위원회의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9조는 우수제안의 시상 등급 및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이미 시상한 경우에도 표절이나 도용의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10조는 2명 이상이 공동제안으로 제출하는 경우 개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하고, 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노력 등에 따라 기념품 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우수제안에 대해서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혁신을 위해 중앙정부에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채택제안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현행에 맞도록 전부개정하여 주민 제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조례의 체계, 내용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를 현행에 맞도록 전부개정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 계 법 령 】

□ 행정절차법

제52조의2(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청(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 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견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삭제 <2023. 8. 1.>
3. “채택제안” 이란 행정청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 이란 행정청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국방·군사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 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제8조(국민제안의 심사) ① 행정청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제22조(관리기간) 행정청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

제23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행정청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 증대 등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우·미·양·가로 측정한다. <개정 2017. 7. 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조세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국민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현행 조례 】

□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을 비롯하여 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성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청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실시부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참여자 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고 접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으며, 구의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흡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등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채택제안의 심사 및 등급 결정
2.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 · 시행한 자(이하 “실시자” 라 한다)의 기여도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 기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업무 부서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등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에 채택여부를 심사 ·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의 정도

③ 제2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견조회 등)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 · 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 · 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불채택제안의 재심)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2조의 관리기간 내에 있는 불채택제안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택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제5장 시상 및 보상

- 제14조(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상훈법」·「정부표창규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및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 등에 대한 구청장 표창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 제15조(인사상 특전)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6조(부상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등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의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 하나, 연구·노력 등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상여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4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8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대구광역시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19조(그 밖의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1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부서로 하여금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관리기간)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제21조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실시의 권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제17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제안 규정」, 「공무원제안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